

###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선출에 관한 세칙 개정안 비교

	현 세칙	개정 세칙	비고
제1조(목적)	이 세칙은 회칙 제13조 제4항에 의한 회장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와 추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좌동	
제2조(구성)	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임 회장 중 가장 최근에 역임한 자로 한다.	좌동	
	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 1. 전임 회장 2. 이사 3. 기타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	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 1. 전임 회장 2. <b>현직 이사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자 5인</b> 3. <b>학회 정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</b>	현재 학회 회원 중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, 이사와 회원 모두 위원장 추천을 통해 위촉하도록 수정
	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정한다.	좌동	
제3조(운영)	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좌동	
제4조(공고 등)	① 위원회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차기회장 후보를 추천 또는 자천 받을 수 있다.	좌동	
	② 제1항에 따라 추천 또는 자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에 경력, 학회 활동 등을 기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좌동	
	③ 홈페이지에 정기이사회 60일 이전에 공고한다.	좌동	
제5조(후보 의 수)	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추천하는 후보의 수는 2인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	좌동	
제6조(수당 등 지급)	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,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좌동	
제7조(기타)	후보 선정에 따른 기타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	좌동	
부칙	이 세칙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	좌동	